

권위적·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339호
2. 발 의 자 : 이민석 의원(찬성 27명)
3. 발의일자 : 2025년 1월 31일
4. 회부일자 : 2025년 2월 5일

II . 제안이유

- 조례 속 권위적·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함.

III . 주요내용

- 가. 조례에 쓰인 권위적 용어인 ‘시달’을 ‘통보’로, 차별적 용어인 ‘소외계층’, ‘간질’, ‘수화’를 ‘취약계층’, ‘뇌전증’, ‘수어’로 변경함.

Ⅳ.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에서 사용된 권위적·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의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됨.

2. 조례안의 일괄 개정 사항

- 법제처는 2006년부터 법령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15년부터는 이를 자치법규로 확대하고, 차별적·권위적 용어와 전문 분야의 관행적 용어를 개선하는 등 체계적인 용어 정비를 시행하고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시달’이라는 권위적 용어를 ‘통보’로 정비하고, 차별적 표현인 ‘소외계층’ 등을 순화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 882개¹⁾ 중 6개를 대상으로 13건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안의 세부 정비 내용은 권위적 용어인 ‘시달’을 ‘통보’로 정비하는 조문 3건(조례 2개)과 차별적 용어를 순화하는 조문 10건(조례 4개)임.

< 조례안 정비 세부내용 >

조항 번호	정비대상 조례명	해당 조례 조항	현행	개정
제2조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5조제1항	시달	통보
제2조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5조제2항	시달	통보

1) 현재 서울시 조례와 규칙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에는 조례 882개, 규칙 234개, 훈령 34개, 예규 12개가 등록되어 있음(2025.2.13.기준).

제3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9조제4항	시달	통보
제4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10호	소외계층	취약계층
제5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소외계층	취약계층
제5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6호	소외계층	취약계층
제5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4호	소외계층	취약계층
제5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7호	소외계층	취약계층
제6조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제5조제7호	간질	뇌전증
제7조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수화	수어
제7조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수화	수어
제7조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수화	수어
제7조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수화	수어

- 이 중 ‘시달’이라는 표현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이나 통지를 전달한다는 권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법제처가 2015년부터 정비 대상 용어로 지정²⁾ 하였고, 2024년 한글날 국민 설문조사³⁾에서 ‘시달’을 ‘통보’로 정비하는 안이 높은 지지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동 용어의 개선은 타당하다 하겠음.
- 그리고 ‘수화’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대상 용어로 지정되어 ‘수어’로의 변경이 권고되고 있으므로, 동 용어의 개선은 법령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소외계층’은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차별적 용어로 규정⁴⁾하였으므로, ‘취약계층’으로의 개정은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조치임⁵⁾.

2)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은 ‘시달’이라는 용어를 상황에 맞게 ‘하달’, ‘통보’, ‘통지’ 등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3) 법제처는 2024년 한글날을 맞아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2,858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행정, 경제, 사회 분야별로 ‘먼지 날림’, ‘반올림’, ‘통보’를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선정하였음.

4)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에서 ‘소외계층’을 차별적 표현으로 규정함.

5) 다만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서 여전히 ‘소외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개정이 필요해 보임.

- 이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행정 가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소외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조례⁶⁾가 이번 개정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는 조례 등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용어의 일관성 및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 한편 안 제6조는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제5조 제7호에 규정된 용어 중 ‘간질’을 ‘뇌전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질’은 대한뇌전증학회에서 부정적 함의와 비과학적 어감을 해소하기 위해 ‘뇌전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필수 정비대상 용어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임.
- 그러나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제5조제7호의 조문은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으로, 조문의 맥락상 여기서 규정한 ‘간질환자’는 신경학적 질환인 ‘간질(癇疾) 환자’가 아닌, 간에 발생하는 질환인 ‘간(肝) 질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안 제6조는 ‘간질’을 ‘뇌전증’으로 오인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동 조문은 원래 조문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함.

입법조사관	연락처
김수은	02-2180-8064

6) 예를 들어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정이 누락된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